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6. 9. 29.>

피해구제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
피해자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
신청내용	피해자 계좌의 송금·이체·이전내역	금융회사등	개설점포	자산종류
		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		명의인
		송금·이체·이전일시	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	
	사기이용계좌등 입금·이전내역	금융회사등	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	명의인
		입금·이전일시	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	
	피해환급자산 입금·이전 계좌등	금융회사등	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	명의인

피해구제 신청사유

※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**금융회사등** 귀하

첨부서류	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